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03 발의연월일: 2025. 2. 20.

발 의 자 : 남인순 • 윤후덕 • 손명수

김현정 · 김 윤 · 이수진

위성락 • 이해식 • 김남근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국 104개 시·군·구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에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정 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 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3조 등).

법률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신건강복지기관"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정신 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회복 및 사회참여를 위한 고용·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정신질환자등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절차조력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신재활시설을"을 "정신건강복지기관을"로, "정신재활시설 소재지"를 "정신건강복지기관 소재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신재활시설"

을 각각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한다.

- ①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거주서비스제공기관: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2. 이용서비스제공기관: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 여 등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8조의 제목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재활시설이"를 "정신건강복지기관이"로, "정신재활시설의"를 "정신건강복지기관이"로, "정신재활시설의"를 "정신건강복지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한다.

제32조제4호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본문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3호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 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 지기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1호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제4호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한다.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한다.

④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한다.

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1호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한다.

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7호 중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정 아 개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 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건강복지기관----.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7. "정신건강복지기관"이란 제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 2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 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 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 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 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 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 회복 및 사회참여를 위한 고 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 용 ·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 다. 육활동 등 지원, 지역사회 거 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정신질환자등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절차조력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을 말한다.

8. (현행과 같음)

8. (생략)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 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렁으 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u>정신재활시설</u>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자격, 설 치·운영신고, 변경신고 및 <u>정</u> 신재활시설의 이용·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u>정신재활시설</u>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u>제4항</u>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

제20소(생산신성즉시기산의 결시
• 운영) ①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2
<u>정신건강복지기관을</u>
<u>소재지</u>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신건강복지기관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신건강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기관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신건강복지기관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신건강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기관
③ (현행과 같음) ④ <u>정신건강복지기관</u> <u>정신</u> 건강복지기관
③ (현행과 같음) ④ <u>정신건강복지기관</u> <u>정신</u>
③ (현행과 같음) ④ <u>정신건강복지기관</u> <u>정신</u> 건강복지기관
③ (현행과 같음) ④ <u>정신건강복지기관</u> <u>정신</u>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신건강복지기관정신 정신기관 5
③ (현행과 같음) ④ <u>정신건강복지기관</u> <u>정신</u>

-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제27조(<u>정신재활시설</u>의 종류) ① <u>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u> <u>각 호와 같다.</u>
 - 1. 생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 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2. 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등 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지원하는 시설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신재 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 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려면 보건복

·.
제27조(<u>정신건강복지기관</u> 의 종류)
①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서비스제공기관: 정신질
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
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거
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 이용서비스제공기관: 정신질
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
·문화·사회참여 등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
 ②정신건강
<u>복지기관</u>
· 제28조(<u>정신건강복지기관</u> 의 폐지
· 휴지 · 재개신고)
- <u>정신건강복지기관</u>
<u>0 년간 0 기계기간</u>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
	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
	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ス	ll29조(<u>정신재활시설</u> 의 폐쇄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
 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 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자격, 설치·운영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제1항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제29조(<u>정신건강복지기관</u> 의 폐쇄
등) ①
<u>정신건강</u>
<u>복지기관</u>
1. (현행과 같음)
2 <u>정신건</u>
<u> 강복지기관</u>
②
정신건
<u> </u>
<u> </u>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u>정신재활시</u> 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제3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
 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 활시설의 폐쇄명령
 - 5. (생략)
 - <u><신 설></u>

<u>정신건강복지기관의</u>
③
정신건
 강복지기관
,
제32조(청문)
1. ~ 3. (현행과 같음)
4 <u>정신건</u>
<u> 강복지기관</u>
5.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무
상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제81조(비용의 징수) 정신요양시 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 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 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 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

재활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

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

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 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 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 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 다. 제81조(비용의 징수) --------정신건강복지기관---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정신 건강복지기관-----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 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 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 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 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3. 제2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 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u>정</u> <u>신재활시설</u>을 설치·운영한 자

4. ~ 7.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벌칙)
<u>.</u>
1.•2. (현행과 같음)
3
<u>정정신건강복지기관</u>
4. ~ 7. (현행과 같음)